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실효적인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예시로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를 규정함(안 제41조제18호).

II. 검토의견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